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9.05.22. 개정 2022.03.04.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실험실습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 (기능)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2. 실험실습실 안전환경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환경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시행
4. 환경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실험폐액, 유해폐기물, 감염성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대책
7. 기타 환경보전 대책 및 환경안전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분야 교직원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개정 2022.03.04.>
- ③ 위원회에 간사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하며, 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을 회의시 배석시킬 수 있다.

##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각 위원의 임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3. 위원회는 필요시 환경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 제6조 (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 ②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회의록작성)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1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3.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